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실연자의 (상업용)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· 디지털음성송신 · 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2024년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, 저작권법 제75조 내지 제76조의2에 따라 실연자의 (상업용) 음반에 대한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지정 단체 :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

나. 지정 요건 :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에 따른 이행 요건 설정(▲분배신청 서류 간소화, ▲미분배보상금 저작물 분류 전 조치 시행, ▲분배 노력 평가 지표 추가 설정, ▲책임경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, ▲해외권리자 DB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, '25.12.31.까지 지정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등)

다. 재검토 기한 :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조치